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아기유니콘을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으로 육성하는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에 참여할 유망 혁신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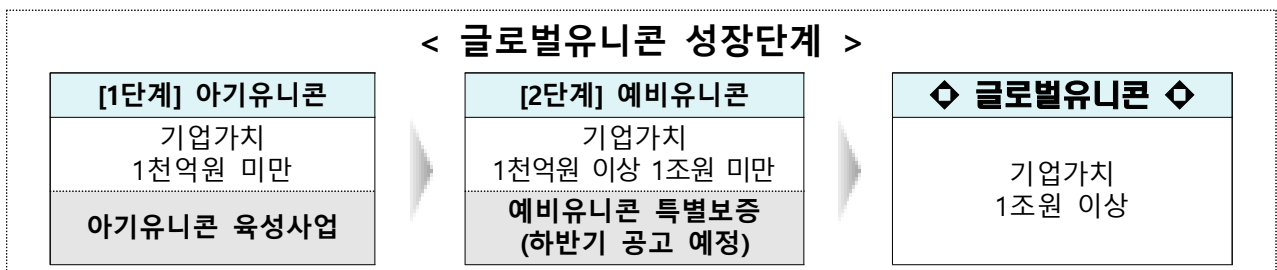
2025년 1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글로벌유니콘 프로젝트 개요

□ 목적

- 글로벌 창업대국 조성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후보기업을 집중 발굴하고, 체계화된 스케일업 지원



□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개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 규모	지원 기간	지원 내용	기업 부담금	신청 접수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 ①, ②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누적 투자실적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또는 기업가치 300억원 이상(투자실적 20억원 미만)	50개사 내외	1년	시장 개척자금 최대 3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1.24.~ 2.14.
				최대 50억원 이내 보증 등	-	

1

사업개요

□ 지원목적

-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아기유니콘 기업을 발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으로 육성

□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최종 선정기업 기준)

□ 지원대상 : 신청마감일 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아래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코넥스 상장기업은 지원 가능)

*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만 해당(예비벤처유형은 제외)

① ① 시장검증, ②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시장검증	○ 국내외 벤처투자기관 ¹⁾ 에서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누적)투자 ²⁾ 유치기업
② 혁신성	i)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B 등급 이상 ※ 1차평가 통과기업에 대해 2차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평가등급 부여 ii) 혁신성장 역량지수(Tech-index) 20점 이상 ³⁾

② ① 기업가치, ②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단, 누적 투자금액 20억원 미만 기업에 한함

① 기업가치 ⁴⁾	○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300억원 이상인 기업 <기업가치 산정기준> • 주식 투자 : 1주당 가격(투자액/주식수) x 총 발행 주식수 • 전환사채 투자 : 주식전환 가격 또는 투자심사시 벤처캐피탈이 산정한 기업가치 ※ 기준시점 : 누적 투자유치 실적 중 최종 투자유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② 혁신성	i)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 등급 이상 ※ 1차평가 통과기업에 대해 2차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평가등급 부여 ii) 혁신성장 역량지수(Tech-index) 20점 이상 ³⁾

1) 벤처투자기관의 인정범위는 [참고1] 참조

2) 투자인정 범위

- 공모마감일 기준 투자계약,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된 신규투자(보통주우선주CB·BW)에 한함(현물, 구주투자 제외)

3)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에서 자가진단 실시 후 진단결과 제출

- 자가진단결과 제출 방법은 [별첨4] '혁신성장 역량지수 자가진단 매뉴얼' 참고

- 재무자료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자가진단 결과산출에 일정 기간(2~3영업일) 소요될 수 있음

4) 기업가치 산정시의 투자는 위 1)~2)에서 정한 투자기관 및 투자금액에 한함

- 단, 최종투자가 Safe 투자인 경우, 직전 투자 건의 기업가치를 적용

□ 지원 제외대상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관련법규, 기술보증기금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및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에 기 선정이력을 보유한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복 수행 불가 사업) 모집공고문 등 안내사항에 '스케일업 지원' 및 '투자 연계 지원'이 명시된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참고2] 참조)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선정 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사업 수행(협약 미체결 시 자동으로 사업 참여 포기 처리)
 - (주의) 동시 선정 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가능 함
 - *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경우에는 협약종료 또는 협약종료예정일이 공고 마감일로부터 3개월이내인 경우 지원가능.
단, 지원 사업간의 사업연도가 상이할 경우 잔여 협약기간에 관계없이 신청·선정 가능(예: 2024년 사업 수행 중인 경우 잔여 협약기간과 무관하게 본 사업 신청 가능)
- ㉢ 기술보증기금이 정하는 보증취급 제한 기업([참고3] 및 보증제한 대상업종[참고4] 해당 시
- ㉣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참고5] 해당 시
-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관련 내규에 저촉 등으로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지원 제외대상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취소 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특별보증) 선정시 같은 기업당 최대 50억원* 이내 특별보증 지원

* 선정시 일부 지원 및 선정 이후 기업성과(후속투자유치, 매출증가액 등)에 따라 추가 지원(세부 기준에 대하여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구 분	주요내용
보증한도	• 운전자금 보증금액 20억원까지 추정매출액과 투자유치금액 중 많은 금액의 1/2 금액으로 우대 적용
보증비율 및 보증료	• 85% 부분보증(협약은행* 이용시 100%), 0.7% 고정보증료를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옵션부여	• 보증지원 이후 후속투자 유치시 보증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보증으로 취급 (옵션비율 : 보증금액의 20%)

* 같은 기업에 대한 지원가능 보증금액은 최대 50억원이며, 보증기관의 기보증금액(유동화회사보증의 유동화기초 자산 편입금액 포함 보증연계투자 제외)을 포함한 금액임

* 신보(보증재단 포함) 거래기업은 전액상환하거나 기보로 전환보증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중복보증 불가)

* 시설자금은 서류제출일까지 설비도입계획(도입처, 품목, 수량 등), 도입자금 규모, 자금 조달계획이 확정되어 관련 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시장개척자금)** 신시장 (국내·외) 조사, 분석 및 협력 파트너 발굴 등을 위한 시장개척자금 **최대 3억원** (정부지원금) 지원

* **총 사업비(100%) 구성 : 정부지원금 50% 이하 + 선정기업 대응자금 50% 이상**
(현금 10% 이상, 현물 40% 이하) ⇒ **최대 6억원**

** 최종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총 사업비 구성(예시) >

총 사업비 (100%)	정부지원금 (50%)	선정기업 대응자금(50%)	
		현금	현물*
600백만원	300백만원	60백만원	240백만원
100%	총 사업비의 5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4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시장개척 관련 업무(국내·외 마케팅, 영업 등)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계상

* [참고6] 시장개척자금 집행 비목 참조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 ('25.4월~'26.3월 예정)

- **(해외투자매칭 지원)** 선정 이후 해외투자 유치기업에 대해 투자유치 금액에 연동하여 추가 보증한도 부여

* 세부 지원 기준 및 지원 한도 등에 대하여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3 선정절차

-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주요내용	일 정
사업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25.1.23(목)
온라인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www.kibo.or.kr/dbbranch)	1.24(금) ~ 2.14(금)
① 1차 평가 (요건 및 기업가치 산정)	▶ 2차 평가 대상기업(150개사 이내) 선정 * 대상기업 기본요건 충족 여부 및 기업가치 산정	~ 2.21(금)
② 2차 평가 (기술평가·보증심사/ 유니콘선정협의회)	▶ (1단계 : 기술평가·보증심사) 1차 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실시 ▶ (2단계 : 유니콘선정협의회) 선정심의위원회 부의 대상기업 (70개사 내외) 선정	~ 4월초

구 분	주요내용	일 정
③ 최종평가 (최종선정위원회)	▶ 2차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전문가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4월 중순
최종선정	▶ 아기유니콘 최종 선정기업(50개사 내외) 발표	4월말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등	▶ 시장개척자금, 특별보증 등	4월말 ~

① 1차평가(서류평가) 기준

- (1단계: 요건검토)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누락여부 등) 검토
 - * 투자실적, 기업가치, 업력,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여부 등
- (2단계: 기업가치 산정) 투자실적에 따른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평가

② 2차평가(기술평가 및 보증심사/심층평가) 기준

- (1단계: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1차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투자용 기술평가모형 적용) 및 보증심사 진행
- (2단계: 유니콘선정협의회) 아래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

평가지표	배 점	평가지표	배 점
1. 글로벌 진출 가능성	30	3. 기술평가등급	20
2. 투자유치기간	20	4. 특별보증 지원 적합성	30
총 점	100		
※ 총점이 동일할 경우 ① 글로벌 진출 가능성, ② 특별보증 지원 적합성, ③ 투자유치기간, ④ 기술 사업평가등급 점수가 높은 순서 기준			
* 가점 :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K-Global Star 선정기업(2점), 비수도권 소재기업(1점)			

③ 최종평가 (전문가평가) 기준

평가지표	배 점	평가지표	배 점
1. 글로벌 성공 가능성	30	3. 특별보증 지원 타당성	20
2. 글로벌 유니콘 기업 가능성	40	4. 사회공헌 가능성	10
총 점	100		

4

연계지원사업 안내

- **(투자자 및 선정기업간 네트워킹 지원)** 투자자 및 선정기업간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투자매칭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기회 마련
 - 아기유니콘기업 중 후속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우수기업과 기보 파트너스*와의 Private IR 피칭과 네트워킹을 유도
 -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보가 선정한 투자 전문가 그룹(VC, AC 등으로 구성)
 - 아기·예비유니콘 선정기업 간 교류회를 개최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업의 빠른 성장과 도약 지원
- **(상장 사전진단)** 상장을 계획중인 기업에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 절차를 준용하여 평가하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자문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아기유니콘 선정기업 중 상장 준비 기업
 - (지원내용) 상장 준비 컨설팅 및 자문 서비스 제공
- **(글로벌 컨설팅)** 해외진출 추진 기업에 대해 민간전문 컨설팅기관*을 매칭하여 글로벌 진출·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 *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컨설팅사, 회계법인, 법무법인을 어드바이저로 지정

- (지원대상) 아기유니콘 선정기업 중 해외진출 희망 기업
 - (지원내용) 민간전문 컨설팅기관 매칭, 글로벌 진출·성장을 위한 맞춤형 all-in-one 지원
- **(글로벌 IR)** 창업기업과 해외 투자자(펀드)와의 만남의 장을 제공, 실질적인 투자매칭을 통한 성공적 딜메이킹 제고 및 해외진출 지원

- (투자 상담회) 협력기관 보유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기업에 관심있는 VC를 사전 파악 하여 구체적 투자 논의를 위한 1:1 미팅기회 제공
 - (투자 IR) 글로벌 VC 대상, '글로벌 IR'을 개최, 아기유니콘 기업에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기회 마련
 - (네트워킹) 현지 투자자 및 한인 창업기업과 교류를 통해 창업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기회 제공

- **(글로벌박람회)**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글로벌 기술 박람회 참여시 여비 지원

- (지원대상) 아기유니콘 선정기업 중 해외진출 희망 기업
- (지원내용) 글로벌 기술 박람회 참여 기업에 한도 내 여비 지원

- **(해외법인설립 지원)** 해외법인설립 추진 법률자문, 인력, 체재비용 등 설립시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

- (지원대상) 아기유니콘 선정기업 중 해외법인설립 추진기업
- (지원내용) 해외 법인 설립 관련 제반 사항 지원

- **(R&D기획 지원)** R&D 결과물의 질적 생산성을 제고하고, 향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술 로드맵 제시

- 중기부 및 과기부 등 부처 R&D 과제 신청 예정 기업 대상 선행기술 조사, 기술로드맵 R&D과제 기획 컨설팅 제공

5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신청하는 자(기업)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업은 동 공고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본 사업 세부 지침, 전담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기업에게 있습니다.
- 최종 선정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여야 협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최종 선정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과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최종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년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사업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사업비는 협약 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 됩니다.
-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검토 및 매 평가과정을 비롯하여 협약체결 전후에도 요건부 적합이 확인될 시 요건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전산시스템의 과부하가 우려되오니 가급적 접수마감 2~3 영업일 전 접수완료를 당부 드립니다.

6 문의처

구 분	담당기관	문의처
사업내용 관련	기술보증기금	051-606-7655, 7694, 607
디지털지점 이용 관련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 혁신성장역량지수(Tech-Index) 자가진단 관련 문의는 (별첨4)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5년 1월 24일(금) ~ 2월 14일(금), 15시까지

☐ **접수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절차[별첨1]>

①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접속(www.kibo.or.kr/dbranch) → ② 'Quick MENU 아기유니콘 신청' → ③ '로그인' → ④ '양식다운로드', '신청하기' → ⑤ 기본정보 입력 → ⑥ 기술사업계획서·투자유치내역서 등 업로드(용량제한 각 항목당 15MB 유의) → ⑦ 제출('신청내역 조회'에서 신청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별첨1]' 참고

*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인터넷 신청시 등록하며, 모든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에 한해 인정 (마감일 전산과부하로 인한 접수 지연·장애 등 발생 가능하므로 사전 등록 요망)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비고	필수여부
1	기술사업계획서	(별첨2)	필수
2	투자유치내역서	(별첨3)	
3	투자계약서 사본(투자유치내역서 상 투자계약서 사본 일체)	-	
4	혁신성장 역량지수(Tech-Index) 자가진단 결과	(별첨4)	
5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기업 자가점검표	(별첨5)	
6	사전동의서 [신청기업용, 개인용]	(별첨6-1, 6-2)	
7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 명부 (전년도말('24.12.31) 기준) * 기준일자: '24.12.31.~'24.12.31.일자로 조회	-	
8	주주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9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 전체 페이지 제출		
10	감사보고서(2021~2024년) (감사보고서 미작성기업은 표준재무제표 제출) * 공고마감일 기준 2024년 결산 이전인 기업의 경우 2021~2023년 자료 제출 및 선정 이후 보완 제출		
11	벤처기업확인서 사본(혁신성장, 벤처투자, 연구개발유형 中 1) * 예비벤처유형은 제외 *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	
12	K-Global STAR 선정서	-	해당시

* 최종평가 대상자는 PPT 발표자료 별도 제출 (추후 안내)

** 평가심사 과정 중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요청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 참 고
1. 벤처투자기관 기준
 2. 2025년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 현황(동시수행 관련)
 3. 기술보증기금 보증취급제한 기업
 4.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
 5.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
 6. 시장개척자금 집행 비목

- 별 첨
1.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2. 기술사업계획서
 3. 투자유치내역서
 4. 혁신성장 역량지수(Tech-Index) 자가진단 매뉴얼
 5.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기업 자가점검표
 6. 사전동의서(신청기업용, 개인용)

□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실적 인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

-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③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④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

- ①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 ④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⑥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 ⑧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외국투자회사***

- * 외국투자회사 : 1)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
- 2)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투자전문회사
- 3) 투자가 이루어진 날 또는 현재 국내외 벤처캐피탈협회 소속의 투자회사

4.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5.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산운용사, 증권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개인투자자 (온라인 소액 투자자 포함) 투자실적 제외

참고2

2025년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 현황(동시수행 관련)

구분	사업명	소관부처	전담(주관)기관	동시수행
1 사업화, 35개 사업				
1	예비창업 패키지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가능
2	초기창업 패키지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가능
3	창업도약 패키지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불가
4	초격차 스타트업1000+ 프로젝트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불가
5	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 보진흥원	불가
6	통합 창업 패키지 지원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불가
7	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불가
8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가능
9	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가능
10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 흥공단	가능
1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가능
12	예술기업 성장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경영 지원센터	불가
13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체육 진흥공단	가능
14	스포츠산업 창업중기(엑셀러레이팅)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체육 진흥공단	불가
15	콘텐츠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콘텐츠 진흥원	가능
16	콘텐츠엑셀러레이터 연계사업화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콘텐츠 진흥원	가능
17	콘텐츠 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콘텐츠 진흥원	불가
18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콘텐츠 오픈이노베이션)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콘텐츠 진흥원	가능
19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가능
20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가능
21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환경부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가능
22	농식품 벤처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 진흥원	불가
23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 진흥원	불가

구분	사업명	소관부처	전담(주관)기관	동시수행
24	농식품 기술평가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농업기술 진흥원	가능
25	농식품 판로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농업기술 진흥원	가능
26	경북·구미 방산혁신 클러스터 전주기 방산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경북·구미 방산클러스터 사업단	가능
27	대전 방산혁신 클러스터 방산 진입형 드론평화 창업 지원	방위사업청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대전방산클러스 터사업단	가능
28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가능
29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가능
30	소규모 신규 창업자 지원사업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가능
31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DATA-Stars)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데이터 산업진흥원	가능
32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ICT GROWTH)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불가
33	K-Global 액셀러레이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불가
34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바우처 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가능
35	유망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불가
[2] 기술개발(R&D), 5개 사업				
1	창업성장 기술개발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가능
2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	가능
3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	가능
4	딥사이언스 창업활성화 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	가능
5	첨단과학기술기업 글로벌 협력 스케일업 R&D 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	불가
[3] 시설·공간·보육, 10개 사업				
1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중소벤처 기업부	한국창업보육협 회	가능
2	지역창업특화지원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가능
3	메이커 스페이스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가능
4	창업존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경기창조경제 혁신센터	가능
5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가능
6	스타트업 파크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가능
7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가능

구분	사업명	소관부처	전담(주관)기관	동시수행
8	공간정보 창업지원사업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산업진흥원, 한국국토 정보공사	가능
9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 지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가능
10	혁신창업멤버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가능
[4] 멘토링·컨설팅·교육, 12개 사업				
1	청소년 비즈쿨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가능
2	스타트업 법률지원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가능
3	IP디딤돌 프로그램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가능
4	IP나래 프로그램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가능
5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 응원	가능
6	농식품 벤처창업센터	농림축산 식품부	전국 농식품벤처창업 센터	가능
7	학생창업팀 육성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가능
8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가능
9	해양수산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가능
10	K-Global 창업멘토링(ICT 혁신기업 멘토링)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가능
11	인·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가능
12	특허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가능
[5] 행사·네트워크, 9개 사업				
1	컴업(COMEUP) 2025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가능
2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중소벤처 기업부	(재)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불가
3	도전! K-스타트업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가능
4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가능
5	환경창업대전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 술원	가능
6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가능
7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농업기술 진흥원	가능
8	원자력 혁신 창업경진대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원자력 협력재단	가능
9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과학기술진흥원	가능
[6] 융자, 2개 사업				
1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가능
2	재창업자금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가능

구분	사업명	소관부처	전담(주관)기관	동시수행
[8] 인력, 1개 사업				
1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이어드림 스쿨)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가능
[9] 글로벌, 13개 사업				
1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불가
2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불가
3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가능
4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가능
5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가능
6	K-스타트업 센터 사업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불가
7	글로벌 스타트업센터(GSC) 운영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가능
8	글로벌 진출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콘텐츠 진흥원	가능
9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불가
10	K-Global 해외진출 지원사업 (글로벌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가능
11	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가능
12	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가능
13	창업이민 인재양성프로그램 (OASIS)	법무부, 중소벤처 기업부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가능

< 보증금지기업 >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자
 - 나.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 보증제한기업 >

1. 휴업 중인 기업
2.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가. 대표자
 - 나. 실제 경영자
 - 다.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연체,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 4회 이상
8. "금융 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이 제한되고 있는 기업

* 보증브로커 개입기업, 허위자료 제출기업, 금품제공기업, 부정청탁기업 등
9. 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 한다)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하되 기금 내규에 따라 경영개선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제외)
10.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11.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나.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다. 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가. 제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 다. 제12호 기업의 실제 경영자
14. 제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참고4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

구 분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新	舊
도박 게임 관련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 불건전 여·부는 도박 해당여·부로 판단	3340	3340
	·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소매업	46463, 47640	46463, 47640
	· 도박기계 임대업	69390	69390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75999	75999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13	91113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91249
사치 향락 관련	· 주류 중개업	46102	46102
	· 귀금속 중개업	46109	46109
	· 주류 도소매업	46331, 47221	46331, 47221
	· 귀금속 도소매업	46492, 47830	46492, 47830
	· 주점업	5621	5621
	·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23	91223
	· 무도장 운영업	91291	91291
	· 마사지업	96122	96122
부동산 관련	·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1	68111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1	68121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68221, 68222	68221
기타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59142	59142
	· 전화방	91229	91229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91241	91241
	· 점술업 및 유사 서비스업	96992	96992

참고5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

구 분	세부항목
결격 요건*	①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실제경영자 본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임 ※ 다만, 실제경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 시 충족으로 심사, 최대주주인 관계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와 동일한 경우에도 요건 충족한 것을 심사
	② 실제경영자가(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금융질서문란, 허위자료 제출 또는 사해행위 사실 없음
	③ 실제경영자가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 사실 없음
	④ 실제경영자(본인이 실제경영자인 기업 포함)가 정책금융(보증부대출 포함)에 대한 용도 외 사용 사실 없음

* ①~④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지원(신청) 불가

참고6**[아기유니콘] 시장개척자금 집행 비목**

☐ 시장개척에 필요한 직접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비 목	내 용
광고선전비	브랜드 개발 비용, 디자인 개발, 타겟 시장 홍보물(영상, 광고, 일간지 등) 제작비, 온·오프라인 광고게재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인건비	마케팅, 시장조사 등을 위해 기업 소속직원 및 단기근로자에 지급하는 급여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시장확대를 위한 제품개선 필요 시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지급수수료	시장개척을 위한 거래 수행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계장치비	창업기업 보유 제품(서비스) 제작 관련 기자재 비용 ※ 현물 계상만 가능
재료비	창업기업 보유 시약 등 재료비 ※ 현물 계상만 가능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서비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비용